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5-56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56호(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5-016호
(어선 제3명신호, 어선 일출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3명신호, 어선 일출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강*****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일출호는 2024. 3. 24. 05:10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낙산항 북방파제 끝단 동방 약 10해리 해상(북위 38도 07분 33초, 동경 128도 51분 24초)에서 제3명신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제3명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 쪽에서 횡단하는 일출호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일출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 협력을 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조종 시 ①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②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상 항행하여야 하며, ③ 다른 선박과 횡단 상태에서 자선이 유지선이라 하더라도 피항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협력 동작을 해야 하며, ④ 상황 판단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 다른 선박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법에 따라 각별히 주의하여 항행하는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